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밤고개로 확장공사(장기계속-1차)]

- 점검일시 : 2019.06.19 (수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진혁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산성옹벽구간 수방을 대비하여 가설도로 주변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정비하고, 내부에 그라우팅 배합장으로 사용한 구덩이는 메워서 물이 고여 장비나 작업자가 빠지지 않도록 조치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379조(가설도로)
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산성옹벽구간 사면 상단에 NAIL을 관입하기 위해 거치한 일자형 사다리의 아웃트리거를 미사용 중으로 전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작업자 재발방지 교육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04(사다리(일자형)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토목부)

- 굴삭기는 규정상 인양 및 운반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,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해당 장비 작업계획서에 소운반으로 한정하여 최대 인양용량을 계산하여 명기하고 장비조정원이 인양용량을 준수하도록 관리 요망
- 자재의 인양은 전도에 의한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줄 걸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, 중량물을 한줄 걸이로 인양하여 전도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재발방지 교육 요망
- 후에는 줄걸이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후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관리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(변형되어 있는 후/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), 제204조(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)



○ 사면 안전(토목부)

- 산성응벽구간 상부 비탈면의 표면수 배제를 위해 설치한 배수포가 천공 작업으로 인해 말려 있어 배수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작업종료 시 방류부까지 펼쳐 놓도록 해당 작업자 교육 및 관리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(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)



○ 기계기구 안전(토목부)

- 그라우트 배합기용 분전반 수전부는 배선용차단기로 미세전류 누전을 감지할 수 없어 접촉시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전부 방호 요망
- 현장에 사용중인 1t롤러와 보도블록 절삭기는 위험기계기구로 반입전과 정기점검(월별)을 수행해야하나 미 실시 되어 있는 상태로 조속히 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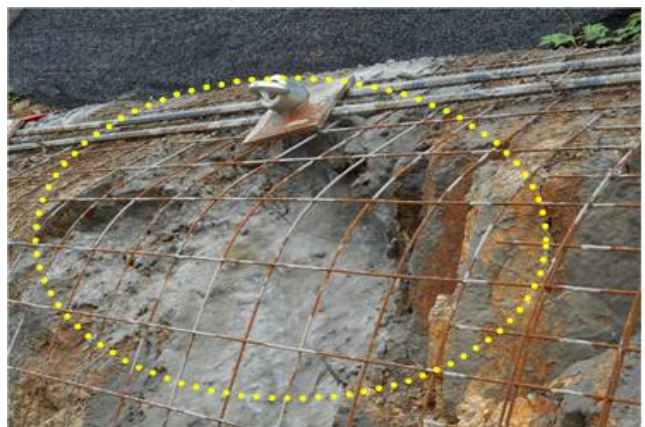


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표기 또는 부착 요망
 - 또한 1t롤러를 운반하기 위한 벨트 슬링의 고리부분의 훼손이 심한 상태로 인양 중 끊어질 경우 낙하 및 전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교체 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(전기 기계/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)
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28(위험기계/기구 안전검사), 031(벨트 슬링)



○ 품질관리(토목부)

- 산성응벽 사면 하단부에 NAIL 시공 중으로 NAIL 천공 홀 인입부가 충전이 미흡하고 여굴이 크게 발생한 구간이 있어 표면 슛크리트 타설 시 공극이 남을 경우 누수로 유지관리에서 부재 부식으로 인한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표면 슛크리트 타설시 철저히 관리 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○ 보건 관리(토목부)

- 직사광선과 지열을 막을 수 없는 도로공사 현장 특성상 여름철 작업 시 열사 또는 일사병이 발생하기 쉬운 현장 여건으로 작업장에서 근접한 위치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동이 용이한 편이 시설 설치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온도/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승인된 수방계획 상의 침사지 두 개소가 최초 설치시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, 임시 배수로도 일부만 시공된 상태이므로 조속히 수방계획에 준하여 정비 및 시공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